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5. 15.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4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5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5. 13 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

편,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제3장에 “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신설함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정함(안 제29조)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그 업무를 정함(안 제30조)
-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분장 사무를 정함(안 제31조)

나. 기 타

-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함.
(안 부칙 제2조)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제고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인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그 설치목적과 소관업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과 도 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타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6조로 하고, 제3장에 제8절(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번지에 둔다.

제30조(원장)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직속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u></p> <p>제29조(설치) ① 법 제 32조, 「중·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 <u>을 설치한다.</u></p> <p>②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번지에 둔다.</p> <p>제30조(원장)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1조(업무)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u>제29조</u> (생략) <u>제30조</u> (생략) <u>제31조</u> (생략) <u>제32조</u> (생략) <u>제33조</u> (생략)	<u>제32조</u> (현행 제29조와 같음) <u>제33조</u> (현행 제30조와 같음) <u>제34조</u> (현행 제31조와 같음) <u>제35조</u> (현행 제32조와 같음) <u>제36조</u> (현행 제33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2008.2.29)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